

지식재산권 남용행위에 대한 공정거래법 적용의 주요 쟁점

- 「지식재산권의 부당한 행사에 대한 심사지침」의 개정 내용을 중심으로

공정거래위원회 시장감시총괄과 | 김준범, 고인혜

I. 머리말 : 지식재산권과 공정거래법

정당한 지식재산권의 행사에 대해서는 공정거래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공정거래법 제59조는 이를 다음과 같이 천명하고 있다.

제2장 적용제외

제59조 [무체재산권 행사행위] 이 법의 규정은 저작권법, 특허법, 실용신안법, 디자인보호법 또는 상표법에 의한 권리의 정당한 행사로 인정되는 행위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그런데 이 조항은 그동안 지식재산권 행사 그 자체에 대한 적용제외조항으로 종종 오해되었으며, 실제 지식재산권 행사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법 집행실적도 충분히 집적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수준이었다. 또한 국내의 낮은 지식재산권 보호수준을 고려할 때, 현재는 지식재산권 보호·육성정책에 집중하여야 한다는 점이 강조되었으며, 지식재산권자의 권리행사를 위축시킬 수 있는 남용행위의 규율은 시기상조라는 평가가 분분했다.

그러나 최근 지식재산권 남용행위를 규율할 수 있는 주요 정책수단으로서 공정거래법 집행의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법 제59조 규정의 무계중심은 ‘적용제외’에서 ‘권리의 정당한 행사’로 이동했다. 기술표준을 토대로 한 특허권자의 강력한 시장지배력, 표준화 과정에 발생하는 특허매복행위(Patent Ambush), 기술 융합 추세로 인한 시장지배력 전이문제, 특허분쟁 가속화와 함께 발생하는 소송 남용 전략 등, 새로운 부(富)의 원천으로 주목받는 지식재산의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시장의 균형 회복을 위한 지식재산권의 남용행위 규율의 필요성도 함께 증대된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공정거래법 제59조는 이제 “부당한 지식재산권 행사에는 공정거래법이 적용된다”로 해석할 필요가 있다. 지식재산권자가 이룩한 혁신적 성과는 지식재산제도 하에 마땅히 보호받아야 할 것이나, 정당한 권리범위를 넘어서 관련 시장의 공정한 거래를 저해하고, 후속 기술혁신을 오히려 방해할 수 있는 지식재산권 남용행위는 공정거래법의 주된 규율대상이 되어야 하는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지식재산권의 부당한 행사에 대한 심사지침」을 전면

개정하고, 지식재산권 남용행위에 대한 공정거래법 적용의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였다. 2000년 제정¹⁾ 이후 10년 만에 해당 심사지침의 규정 내용을 대대적으로 개편하였으며, 특히 이러한 제도 변경은 지식재산권 남용행위에 대한 공정위의 감시가 점차 강화될 것임을 내포하고 있는 것이기도 하다. 이하에서는 개정된 심사지침의 내용을 중심으로 지식재산권 남용행위에 대한 공정거래법 적용 문제를 논의하고자 한다.

II. 심사지침의 주요 개정내용

1. 적용범위 확대

기존 심사지침은 국제계약상 지식재산권 남용행위에 대해서는 「국제계약상의불공정거래행위등의유형및기준」(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1997-23호)을 적용하도록 규정하였다. 그러나 동 고시가 2009년 8월 규제일몰제의 도입과 함께 폐지되면서 외국사업자를 상대로 한 국제계약상 지식재산권 행사에 적용할 지침이 미비되는 문제가 발생하였다. 특히, 지식재산권 관련 계약은 원천 기술을 보유한 외국사업자를 거래상대방으로 하는 경우가 많다. 또한, 국내기업이 외국사업자와 실시허락 계약 체결시 부당한 요구사항에 대응하고 협상력을 강화하는 근거로 해당 지침을 사용하여왔다는 점에서도 제도적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었다. 실제 상당수의 중소기업들은 “폐지된 고시를 다시 제정해 달라”는 요구를 끊임없이 제기하여왔다. 이에 개정된 심사지침에서는 적용 범위를 확대하여 외국사업자가 행한 행위라 하더라도 국내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해당 지침이 적용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다.

2. 동태적 효율성(Dynamic Efficiency)을 고려한 합리의 원칙 적용

개정된 심사지침은 지식재산권 행사에 공정거래법 적용시 효율성 증대효과와 공정거래저해효과를 비교형량하여 위법성을 심사하는 합리의 원칙이 기본 적용된다는 점을 분명하게 규정하고 있다. 더 나아가 위법성 판단시 고려되는 효율성 증대효과가 특정 시점의 정태적 분석을 토대로 한 것에 국한되지 않고, 기술혁신의 촉진을 통한 상품가격 하락, 품질 제고, 소비자 선택권 확대 등으로 향후 관련 시장의 동태적 효율성을 증대시키는 부분을 포함하도록 하였다.

지식재산권 행사와 관련된 동태적 효율성을 고려하는 것은 혁신적 기술에 대한 배타적 독점권을

1) 지식재산권의 부당한 행사에 대한 심사지침은 2009년 제정된 이력이 있지만, 이는 규제일몰제 도입에 따라 심사지침이 일괄 폐지되고 타당성 검토 후 다시 제정됨에 따른 것이었다. 실질적인 심사지침의 규정내용은 2000년 제정 이후 2010년 개정 전까지는 변동된 바 없다.

부여함으로써 기술개발 유인을 제공하고, 산업 발전을 도모하고자 한 지식재산권의 제도적 취지를 직접적으로 고려한 부분이다. 동태적 효율성은 상충관계로 비춰지기 쉬운 공정거래법과 지식재산권법의 접점을 형성한다. 제도적으로 보장된 특허권의 독점력은 일견 관련 시장의 경쟁을 저해하는 측면이 있으나, 새로운 기술혁신의 유인을 제공하는 한편, 해당 특허 관련 정보를 공개하여 더욱 진보된 기술발전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장기적인 사회적 후생 증대에 기여하게 된다. 이와 같이 제도적 장치를 통하여 단기적으로 경쟁을 제한한 결과, 경쟁 촉진의 궁극적 목표인 사회적 후생 증대를 달성하게 된다는 특허제도의 기본 논리는 정당한 지식재산권의 행사에 공정거래법 적용을 제외시켜야 하는 근본적 이유이다. 같은 맥락에서 이는 지식재산권 행사의 기술혁신효과를 공정거래법 적용시 고려하여야 하는 근거가 된다.

단, 지식재산권의 제도적 취지를 반영한 정당화 사유가 부당하게 확대되어 공정거래법 집행 근거를 잠식시키지 못하도록, 개정된 지침에는 동태적 효율성 증대효과의 입증수준이 함께 규정되었다. 즉, 이러한 동태적 효율성이 존재할 것이라는 점이 단순하게 기대되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고, 해당 효과가 발생할 것이라는 고도의 개연성이 분명하게 입증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한편, 개정된 심사지침은 합리의 원칙 적용의 예외로 최저가격 재판매유지행위와 위계에 의한 고객유인을 규정하고 있다. 먼저 최저가격 재판매유지행위는 공정거래법 제29조의 규정 내용과 그 기본 취지를 우선하여, 합리의 원칙이 아닌 당연위법 원칙이 적용되도록 하였다. 또한, 위계에 의한 고객유인의 경우는 불공정거래행위 심사지침(공정거래위원회 예규 제72호) 규정 내용²⁾과의 정합성을 고려하여, 효율성 증대효과를 고려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하였다. 위계에 의한 고객유인의 경우, 그 속성상 효율성 증대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그러한 효과가 존재하는 경우에도 위계에 근거한 '수단' 적 불공정성을 효율성 증대라는 '결과' 로 정당화 하는 것이 바람직한가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3. 수범자의 예측 가능성을 고려한 부당성 판단기준 구체화

개정된 심사지침은 기존 지침의 법조문 형식에서 탈피하여 법 위반행위 유형을 규정하는데 그치지 않고, 지식재산권 행사의 부당성 판단시 고려하여야 할 주요 사항, 관련 예시 등을 풍부하게 서술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방식은 비교적 최근 제·개정된 「공동행위 심사기준」과 「불공정거래행위 심사지침」에서도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사항이며, 이는 수범자의 시각에서 법 집행의 예측 가능성을 제공하여 법 위반행위를 예방하는 효과를 강화하기 위함이다.

관련 시장 상황의 변화에 따라 유연한 법 적용이 필요한 경제법의 근본적 특성상 공정거래법은 법 집행의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다른 법에 비하여 불확정적인 개념을 자주 사용한다. '부당하게'

2) 「불공정거래행위 심사지침」 V, 4. 나. (2), (다) 위계에 의한 고객유인은 그 속성상 합리성 등에 의한 예외를 인정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한다.

라는 단어에 수많은 논의를 함축하고 있는 공정거래법의 이러한 특성은 수범자의 예측 가능성을 불가피하게 저해하는 측면이 있다. 개정된 심사지침은 이러한 법 집행의 실효성과 예측 가능성 간의 조화를 위하여 '부당하게' 라는 포괄적 요건을 사용하여 남용행위 유형을 예시하는 한편, 부당성 판단시 고려사항을 상세히 서술하여 포괄적 규정을 보완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특히, 지식재산권의 부당한 행사에 대한 심사지침은 지식재산권 행사에 대한 공정거래법 적용 제외 여부를 판단하고,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 부당한 공동행위, 불공정거래행위 등 각 규정별 심사지침 적용단계로 넘어가는 가교 역할을 수행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남용행위 유형을 지나치게 구체화하여 개별 심사지침 적용시 제한요인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식재산권 행사의 특수성을 반영한 고려요소들을 적시하여 공정거래법 적용시 실질적인 준거자료로 활용되도록 하여야 한다.

이러한 목표를 효과적으로 담보하기 위하여 개정된 심사지침은 각 항목별로 다음과 같은 4단계의 구성방식을 통하여 지식재산권 행사의 부당성 판단기준을 구체화하고 있다.

〈지식재산권 남용행위 세부 유형별 규정내용〉

〈예〉 III. 1. 가. 실시허락의 대가

(1) 기본 특성 및 주요 고려사항	혁신적인 기술개발을 통한 특허 취득과정에는 통상 상당한 연구개발 기간과 비용, 투자위험이 수반된다. 이러한 특성으로 인하여 특허권자는 추가적인 실시허락으로 발생하는 비용이 크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특허 취득과정에 이미 지출한 비용을 회수하기 위하여 높은 실시료를 부과하는 경우가 많다. 특허권자가 이룩한 기술적 성과에 대하여 정당한 보상을 제공하고 새로운 기술혁신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일반적으로 이러한 실시료 부과행위는 특허권에 의한 정당한 권리행사로 볼 수 있다. (중략)
(2) 적용 가능성이 높은 공정거래법 규정	다만 일정한 행위가 법 제3조의2 [시장지배적지위남용 금지], 제19조 [부당한 공동행위 금지], 제23조 [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등에 위반되는지는 각 조항에 규정된 별도의 위법성 성립요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한다.
(3) 남용행위 유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부당하게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실시료를 결정·유지 또는 변경하는 행위 ② 통상적인 거래관행에 비추어 볼 때 현저히 불합리한 수준의 실시료를 부과하는 행위 ③ 부당하게 거래상대방 등에 따라 실시료를 차별적으로 부과하는 행위 ④ 부당하게 실시 허락된 기술을 사용하지 않은 부분까지 포함하여 실시료를 부과하는 행위 (중략)
(4) 남용행위의 구체적 사례	〈예시 1〉 실시료의 차별적 부과행위 갑(甲)은 디지털 이동통신기술 관련 특허를 보유한 사업자이다. 갑은 해당 기술의 실시허락을 통하여 실시료로 수익을 창출하는 한편, 해당 기술을 이용한 휴대폰에 사용되는 모뎀 칩을 직접 제조·판매한다. 갑의 디지털 이동통신기술은 통신산업 관련 협회에서 기술표준으로 선정되었으며, 갑은 표준 선정 당시 해당 기술을 합리적이고 비차별적인 조건으로 실시허락 하겠다고 약속하였다. (중략)

Ⅲ. 지식재산권 남용행위의 유형별 주요 쟁점

개정된 심사지침에는 각 지식재산권 남용행위 유형별 세부 규정을 대폭 신설하였다. 기술표준과 관련된 특허권 남용, 특허소송 남용 및 특허분쟁과정의 부당한 합의 관련 내용을 새롭게 규정하였으며, 적용 규정만 간단히 언급된 기존 심사지침의 특허 풀(Patent Pool) 및 상호실시허락 관련 규정은 구체적으로 보완하였다.

1. 특허 풀

‘특허 풀’이란 복수의 특허권자가 각각 보유하고 있는 특허를 취합하여 상호 간에 또는 제3자에게 공동으로 실시하는 협정을 의미한다. 특허 풀은 보완적인 기술을 통합적으로 운영함으로써 관련 기술 분야에 대한 탐색비용이나 복수의 특허권자에 대한 교섭비용 등을 절감하고, 침해소송에 따른 기술 이용의 위험을 감소시켜 관련 시장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기술의 이용을 촉진시킨다는 점에서 기본적으로 친경쟁적 효과를 갖는 것으로 인식된다. 그러나 특허 풀 관련 사업자 간의 부당한 공동행위, 특허 풀에 포함되지 않은 제3의 경쟁사업자에 대한 배제행위로 대표되는 특허권 남용 행위에는 공정거래법이 적용될 수 있다.

특히, 개정된 심사지침은 특허 풀을 통한 지식재산권 행사의 부당성을 판단할 때 특허 풀의 구성 기술, 실시형태, 운영방식을 구체적으로 고려하도록 하였다. 대체관계에 있는 기술로 구성된 특허 풀, 공동실시에 비필수적인 특허 또는 무효인 특허가 포함된 특허 풀의 일괄 실시는 부당한 것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크다. 또한, 특허 풀의 일괄 실시만 허용되고 개별 기술의 실시를 금지하는 경우와 특허 풀에 참여하지 않은 제3의 사업자에 대하여 배타적 입장을 취하는 경우에도 관련 시장의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크다. 반면, 특허권자와 독립된 전문가 집단이 특허 풀을 평가·운영하는 것은 특허 풀을 구성하는 개별 특허에 대한 객관적 가치평가를 용이하게 하고, 사업자의 부당 공동행위 우려를 완화시킬 수 있다.

2. 기술표준 관련 특허권의 남용

기술표준의 범용성과 특허권의 배타적 속성이 결합되면 관련 시장에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게 된다는 점에서, 기술표준으로 선정된 특허권의 남용행위는 특히 공정거래법상 중요한 논의대상이다. 개정된 심사지침에서도 기술표준과 관련된 특허권 남용행위 문제를 비중 있게 반영하고 있으며, 특히 표준 선정 이전의 특허 공개 및 FRAND(Fair Reasonable And Non-Discriminatory) 조건 협의절차를 부당성 판단 시 명시적인 고려요소로 반영하였다. 표준화 선정과정에 관련 특허

의 존재를 기만적으로 은폐하거나 기술 표준 선정 이후 FRAND 조건에 반하여 특허권을 실시하는 행위는 부당한 것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이러한 특허 공개 및 FRAND 조건 협상과 관련된 논의들은 각 표준화 기구에서 자율적으로 내부 규칙으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러나 기술표준의 확산과 남용행위에 대한 보편적인 우려를 고려할 때, 이는 각 표준화 기구의 자율적 규칙에 의존할 사항만은 아니다. 같은 맥락에서 EU 경쟁당국의 기술이전계약에 대한 EC 81조 관련 가이드라인 또한, 기술표준으로 선정된 기술은 공정하고 합당하며 비차별적인 조건으로 제3자에게 실시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명시적인 규정³⁾을 마련해 두고 있다. 기술표준으로 선정된 특허의 강력한 파급효과를 고려할 때, 선정과정의 절차적 공정성 및 선정 이후의 합리적 이용 가능성이 담보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동일한 맥락에서, 공정거래위원회는 2009년 CDMA 표준으로 선정된 특허권의 실시료를 차별적으로 부과하여 경쟁사업자를 배제하고 관련 시장에 대한 지배력을 강화한 퀄컴의 행위에 대하여 시정명령 및 과징금을 부과함으로써 기술표준 관련 남용행위에 경종(警鐘)을 울린 바 있다.

3. 특허소송 남용행위

특허침해소송은 특허권자의 중요한 권리보장수단이다. 헌법상 직접 보장되는 재판청구권을 고려할 때도 특허권자가 소송을 제기한 행위에 공정거래법을 적용할 때는 신중한 접근이 특히 요구된다. 그러나 객관적으로 명백히 근거 없는 소송을 제기하여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방해하는 경우에는 공정거래법 적용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특히, 시장에서 평판이 형성되지 않은 신규 사업자나 중소기업에 대한 특허소송 남용은 돌이킬 수 없는 사업활동 방해효과를 초래할 수 있다. 특허권자가 이를 악용할 경우, 사후적인 소송 결과와는 무관하게 장기간에 걸친 소송과정에서 경쟁사업자 배제의 목적을 충분히 달성할 수도 있다. 특히, 특허소송이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에 필요한 행정적 절차를 지연시킬 수 있는 경우라면 소송남용의 우려는 배가된다.

한·미 자유무역협정(한·미 FTA)과 함께 의약품업계에서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허가-특허연계제도의 도입이 단적인 사례이다. 현재는 신약 특허권자가 복제약 제조업자를 상대로 특허침해소송을 제기한다고 하더라도, 식약청의 복제약 허가 및 상품 출시가 정상적으로 진행될 수 있기 때문에 사업활동 방해효과가 크지 않을 수 있다. 그러나 향후 한·미 FTA 비준으로 미국식 허가-특허연계제도가 국내 의약품업계에 도입될 경우, 신약 특허권자가 소송 제기시 복제약 허가가 자동적으로 지연되는 효과가 발생한다. 소송을 제기하는 것만으로도 복제약의 출시를 지연시킬 수 있기 때문에 특허권자의 소송 남용의 유인이 증대하는 것이다. 만약 이러한 소송이 무효인 특허를 토대

3) Guidelines on the application of Article 81 of the EC Treaty to technology transfer agreements(2004/C 101/02) 167. "It will normally be required that the technologies which support such a standard be licensed to third parties on fair, reasonable and non-discriminatory terms."

로 한 명백한 근거가 없는 소송에 불과하다면, 국민건강과 직결되는 의약품 시장의 경쟁 및 소비자 보호 측면에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헌법상 보장된 재판청구권의 보장문제나 특허권자의 정당한 권리행사가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를 고려할 때, 특허소송에 대한 공정거래법 집행이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은 분명하다. 특히, 사후적으로 특허권자가 패소하였다는 사실만으로 특허소송 남용행위로 추정되어서는 안 될 것이며, 근거 없는 소송이라고 하더라도 사업활동 방해효과 등의 공정거래법상 위법성 요건의 충족 여부에 대한 엄밀한 검토가 추가적으로 요구된다. 이러한 맥락에서 개정된 심사지침 역시 소송의 사후적 결과가 아닌 소송 제기의 기본적 합리성 측면에서 남용행위 여부를 판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4. 특허분쟁과정의 부당한 합의

특허권자는 고비용의 소송절차 이외에도 당사자간 합의를 통하여 특허침해 여부에 대한 분쟁을 해소할 수 있다. 이는 소송비용과 기술 이용의 위험을 감소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특허권자의 권리 보장을 위한 효율적 분쟁 해결수단으로 인정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합의가 무효인 특허의 독점력을 부당하게 지속시키고 경쟁사업자의 신규 진입을 방해하는 경우, 단순히 사업자 간의 분쟁 해결문제로 정당화 할 수 없는 더 큰 사회적 비용이 초래될 수 있다.

이러한 문제의식 하에 개정된 심사지침은 특허권의 정당한 권리범위를 넘어서 후속 혁신 및 관련 시장의 경쟁을 제한하는 내용의 부당한 합의를 하는 경우, 법 제19조의 부당공동행위를 포함한 공정거래법이 적용될 수 있음을 규정하였다. 특히, 경쟁관계에 있는 사업자가 특허권이 만료된 이후의 기간까지 시장 진입을 지연하거나 특허와 무관한 시장의 진입을 지연하는 것을 조건으로 특허분쟁과정에 합의하는 것은 특허권을 이유로 정당화 될 수 없다. 만약 분쟁의 대상이 된 특허가 무효임이 명백하거나 분쟁 당사자가 무효인 사실을 인지했음에도 불구하고 합의한 경우라면, 무효인 특허권 존속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 측면에서 부당성이 더욱 큰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특허분쟁과정의 부당한 합의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하여, 심사지침은 대표적인 사례로 신약 특허권자와 복제약 사업자 간의 소위 '역지불합의' (Reverse Payment or Pay-for-delay)를 구체적으로 예시하고 있다. 특히, 미국, EU 경쟁당국을 중심으로 역지불합의의 막대한 사회적 비용⁴⁾이 크게 문제되면서 특허분쟁과정의 부당한 합의문제는 새로운 지식재산권 남용행위 유형으로 중요하게 부각되었다.

특히, 미국은 역지불합의에 대한 적극적 법 집행은 물론 정책보고서 발간, 입법적 해결방안 모색

4) 미국 FTC는 역지불합의로 인하여 매년 소비자에게 35억 달러의 비용이 추가로 발생하고 있다고 발표한 바 있다.
- Pay-for-delay : How drug company pay-offs cost consumers billions 2010, 1.

등으로 소비자 피해 예방에 발 빠르게 대응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그 중에서도 의약품 제조업자 간의 합의를 FTC와 법무부(DOJ)에 신고하도록 의무화 한 「MMA : Medicare Prescription Drug, Improvement, and Modernization Act」(2003)는 특허분쟁과정의 부당공동행위를 집중 감시할 수 있는 유용한 제도적 장치로 주목할 필요가 있다. 또한, 미국 FTC는 Schering-Plough 사건 이후 역지불합의에 대한 미국 연방 대법원의 소극적 태도를 입법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 중이다. 더욱이 최근에는 오바마 대통령이 건강산업 개편안 제안서 발표와 함께 역지불합의의 사회적 폐해를 지적하면서 FTC에 시정권한을 부여하는 방안을 지지한다고 밝힌 바 있다. 역지불합의에 대한 외국 경쟁당국의 적극적 대응체계는 국가 간의 제도적 차이점에도 불구하고, 향후 동 분야에 대한 공정거래법 적용을 검토할 때에도 시사 하는 바가 크다.

IV. 결어 : 향후 과제

지속적인 기술혁신, 역동적인 변화를 특성으로 하는 지식재산권 분야는 그 변화 속도에 걸맞은 제도의 진화를 요구할 것이다. 이번 심사지침 개정이 성숙된 논의를 집결하여 만든 완결판이 아니라 오히려 새로운 논의를 확산시키는 재도약의 계기로 평가되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특히, 기술(Technology)지향적 관점에서는 다 포괄하기 어려운 상표권이나 저작권 등의 특수성을 심사지침에 보다 엄밀하게 반영하기 위한 논의가 계속되어야 할 것이다. 개정된 심사지침은 대표적인 지식재산권 남용행위인 특허권을 중심으로 규정하되, 다른 지식재산권에 이를 유추적용하도록 하여 지침 규정의 효율성 측면을 중시하였으나, 향후 각각의 지식재산권 남용행위 유형 및 판단기준에 대한 논의가 성숙되면 개별 규정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기술혁신을 통한 동태적 효율성 증대효과를 위법성 판단 시에 고려하는 문제 또한 보다 정밀한 논의를 필요로 한다. 이는 특히, 미국이나 EU 등 외국 경쟁당국에서도 경쟁법 집행의 합리화를 위한 주요 해결과제로 인식하고 있는 사안이다. 정태적 효과분석으로 포괄할 수 없는 지식재산권 분야에 기술혁신효과를 반영하여야 한다는 당위성에 공감하면서도, 각 경쟁당국은 이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반영할 것인가에 대한 실무적인 고민에 직면하고 있는 것이다. 향후 지식재산권 분야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적극적인 법 집행과 이에 따른 판례의 집적과 학계의 연구활동이 이러한 고민에 보다 나은 대답을 가능하게 할 것이라고 기대한다.